

# 제76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9.5.2.(서면심의)

## 안건명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76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 【주요 심의내용】

- 가시설 설계에서 '주변 하천 및 지하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수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 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측정은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by 기법을 이용하고 소음지도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하차도 설계 관련 '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지하수위는 실측조사 수위와 설계수위를 검토하여 반영' 및 '집중 호우시 지하차도내 우수유입 배제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시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시설 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도록 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 건설기술심의 검토 의견서

###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 의견	비고
	<p>○ 공공부분에서 생산된 지반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반조사에서 '공간정보담당관 제출'은 삭제하고, 기존 지반조사 자료 활용 관련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li> <li>⇒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li> <li>- 시스템명 수정: 서울특별시 지반정보관리시스템 → 서울특별시 지반정보 통합관리시스템(<a href="http://surveycp.seoul.go.kr">http://surveycp.seoul.go.kr</a>)</li> <li>- 추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a href="http://www.geoinfo.or.kr">http://www.geoinfo.or.kr</a>)</li> </ul>	
	<p>○ 내진설계 자료 요약서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것</li> <li>※ 근거: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기술심사담당관-10025('16.6.7.)</li> </ul>	
	<p>○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도록 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작성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방서 작성시 시공편의를 위한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할 것</li> <li>※ 현장활용서 작성시 서울시 전문시방서 부록(현장활용서) 참고하여 작성</li> <li>- 성과품납품목록 :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현장활용서 포함) p71</li> </ul>	
	<p>○ 배수시설 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18.1.22. 수립된 「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4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현기간 10년: 강우강도식 <math>\frac{586.5237}{t^{0.4621} + 1.1235}</math>, 확률강우량 75.6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현기간 30년: 강우강도식 <math>\frac{993.3199}{t^{0.5162} + 2.4809}</math>, 확률강우량 92.9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내역에는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과업내용서에는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상호 불일치 하므로 일치 되도록 검토할 것</li> <li>○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이 '18.1.1부터 시행 중이므로,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에 동 법을 포함하도록 할 것(p18)</li> <li>○ 부서명은 최신 기준으로 수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환경개선과 → 보행정책과 (p42)</li> </ul> </li> </ul>
전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설계기준'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p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설비 기술기준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li> </ul> </li> <li>○ '2) 운전자 고려사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p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로폭 축소 및 평면교차로 신설시 적절한 노면회도가 유지되고, 회도의 분포가 균일하여야 한다.</li> </ul> </li> <li>○ '3) 신호등 설계'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p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호기 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신호기(신호제어기, 신호등, 지주 등 포함)설치에 관한 사항</li> <li>2) 케이블(전기, 통신, 신호) 공사에 관한 사항</li> <li>3) 관로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li> <li>4) 접지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부대시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li> </ol> </li> <li>다. 안전표지 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로등 및 가로수 등 기존 시설물의 위치를 고려, 시인성 저해요인 지양</li> <li>2) 한 장소에 여러 개의 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시인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li> <li>3) 동일한 지주에 3개 이상의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li> <li>4)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li> <li>5) 도로상황에 맞는 표지판을 선정</li> </ol> </li> </ul> </li> <li>○ '5) 가로등 설치기준'에 아래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p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설치 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심의대상 시설일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신청</li> </ul> </li> </ul>

	<p>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가로등 이설 및 교체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점등없이 시행 하여야 한다.</li> <li>- 등기구의 배광곡선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등기구를 반영하여 인접 건축물 등에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li> <li>-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결과를 설계도서에 적용하여야 한다.</li> <li>- 보행로 및 버스정류장 설치에 따른 등기구 용량 증가 및 등주 추가 설치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li> <li>-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li> <li>- 가로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할 것 ⇒ 가로등은 주변의 다른 조명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도로와 도로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하여야 한다.</li> </ul>	
기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39) 제4장 실시설계 1.일반사항 2)의 (1)항과 p48) 10.방재시설설계 2)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일반사항 : 지하차도 방재등급은 연장 및 위험도 기준을 검토하여 선정한다.</li> <li>- 10. 방재시설 설계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차도의 방재등급은 1등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li> </ul> </li> <li>○ 13. 기전설비설계 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p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23호 2015.7.22)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25호]에 따르며 … 한다.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5.7.22.) 및 도로터널의 화재 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에 따르며 … 한다.</li> </ul> </li> <li>○ 23.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3) 관련법령 및 기준의 아래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p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기타 관련법규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기타 관련법규</li> </ul> </li> </ul>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4월 일

심의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서명)

본 검토서는 2019.4.25(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p>1. 제3공구 사업과 연관성 여부 검토 필요</p> <p>(1) 청담도로공원은 신천나들목과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과 물리적 거리가 있어 직접 연관성이 낮음에도 전기·통신설비의 설계가 필요한지 연계설비로서 필요하다면 설명 필요(52쪽, 11번)</p> <p>(2) 공원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CCTV설비가 사업지의 공원접근동선 진입구부터 계획되어야 해야할 듯함(53쪽, (4)번)</p> <p>(3) 교통처리계획도상에도 보행자 이용도로계획도 상에 지상공원 및 청담도로공원 보행자접근도로계획 포함 여부 검토(65쪽, ⑦)</p> <p>2. 참조하는 기준해설 및 지침은 경우 발행년도를 포함하거나 '최신판'이나 단서(※ 또는 각주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임(53쪽, 4 등)</p>	
종합의견	원안채택	

2019년 4월 25일

심의위원 : 이미영 (서명)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Page	파일내용서(당초)	수정사항(법정)	비고	
4	<p>3.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조정이 필요한 경우 <u>우리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u></p>	<p>3.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조정이 필요한 경우 <u>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u></p>		내용변경
5, 6 표 내용 등열 적용	<p>3.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표내용) 3공구 삼성교 차로 확장 (표내용) 3공구 삼성교 및 봉은교 보행로 확대 삼성교(L=280m), 봉은교(L=270m) 구간</p>	<p>3.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표내용) 3공구 삼성교 차로확장 및 보행로 확대 (표내용) 3공구 봉은교 보행로 확대 봉은교(L=270m) 구간</p>		내용변경 내용변경
5, 6, 7	<p>3.과업의 개요 4.과업기간</p>	<p>3.과업의 개요 4.과업기간 - <u>공구별로 해당하는 내용만 표기하고 해당사항 없는 내용 삭제 필요</u></p>		내용삭제 필요
5	<p>3.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범위 및 규모 ~~ <u>교통분석 및 평가</u>, 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기타 <u>우리청이 계약서~~</u></p>	<p>3.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범위 및 규모 ~~ <u>교통 현황 조사 및 분석, 재해영향평가</u>, 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구조물 형식 결정,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기타 <u>발주기관이 계약서~~</u></p>		내용변경, 삭제, 추가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Page	과업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변경)	비고	
6	3.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내용 (7) ~~ 개선에 따른 <u>효과분석</u> ① <u>효과측정</u> 은 사업시행~~ ③ ~~ 도로시설에 대한 <u>파급 효과</u>	3.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내용 (7) ~~ 개선에 따른 <u>영향분석</u> ① <u>영향분석</u> 은 사업시행~~ ③ ~~ 도로시설에 대한 <u>영향 분석</u>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7	3.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내용 (8)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u>운영시 교통처리계획</u> 과 각 단계별 ~~	3.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내용 (8) 공사중 교통처리계획과 각 단계별 ~~	내용삭제	
7	3.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내용	3.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내용 <u>(11)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u> <u>당초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u>	내용추가 내용변경	
7	3.과업의 개요 4) 과업기간 (표내용) 4공구 <u>과업기간 18개월</u>	3.과업의 개요 4) 과업기간 (표내용) 4공구 <u>과업기간 21개월</u> : 통합관리를 위해 공기 통일 필요	내용변경	
8	4.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5) <u>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u>	4.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5) <u>관할 구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때</u>	내용변경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Page	과업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변경)	비고
8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6) <u>공공축량 계획</u>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6) <u>공공축량 계획 및 지반조사 계획</u>	내용변경
11	8. 계약상대지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u>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u> 과오나 오류~~	8. 계약상대지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내용삭제
12	9. 설계자문 등 1)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u>본 과업수행 기간 중 ~~</u>  1)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2)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3) 건설사업관리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9. 설계자문 등 1) 자문시기 <u>Page14의 (3) 내용으로 기입</u> <u>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u> <u>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한다.</u> <u>①~~~, ②~~~, ③~~~, ④~~~</u> 2)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3)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4) 건설사업관리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내용변경 번호변경
15	15. 과업내용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3) 실조사(지반, 문화재 고증, 지표조사 등)~~~	15. 과업내용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3) 실조사(지반, 문화재 지표 조사 등)~~~	내용삭제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age	과업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변경)	
17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u>(8) 과업지역 연속지적도</u>		내용추가
20	24.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3) 관련법령 및 기준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3) 관련법령 및 기준 <u>(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u> <u>당초 (8)→(9), (9)→(10),</u> <u>(11)→(12), (12)→(13),</u> <u>(13)→(14), (14)→(15)</u>		내용추가 번호변경
21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3) 대기환경의 질 개선이 가능한 <u>수종선정 및 수질정화 공법</u> 을 고려하여야 한다.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3) 대기환경의 질 개선이 가능한 <u>수종선정을 고려하여야 한다.</u>		내용변경
21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3)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3)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 우회를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내용변경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 의견			비고
	Page	파일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별경)	비고
	21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2) 빌주기관은 <u>기본(또는 실시)</u> 설계에~~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2) 빌주기관은 <u>기본 및 실시</u> 설계에~~	내용변경
	21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4) ~~건설사업관리를 <u>시행</u>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4) ~~건설사업관리를 <u>시행하고</u> 계약상대자에게~~	내용변경
	21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5) 건설안전을 ~~ ⑦ 부서지기 쉬운 <u>자재가 최소화되도록</u> 하여야 하며	25.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5) 건설안전을 ~~ ⑦ 부서지기 쉬운 <u>자재는 사용을 지양하여야</u> 하며	내용변경
	22	26. 기타사항 2) <u>시점</u> 보정 작업은~~	26. 기타사항 2) <u>시·종점</u> 보정 작업은~~	내용변경
	23	1. 조사항목 2) <u>수문조사</u>	1. 조사항목 2) <u>수리·수문조사</u>	내용변경
	23	1. 조사항목 14)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조사항목 - 14) 항목 삭제 (9)와 중복) <u>당초 (15)→(14)</u>	내용삭제 내용변경
	26	2. 조사내용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④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 가설비 계획	2. 조사내용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④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 가설 계획	내용변경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Page	파일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별경)	
	34	1. 기본계획 검토 2) 제2장 “조사 업무”를~~~ (13) <u>기기</u> 관련 사업계획 등	1. 기본계획 검토 2) 제2장 “조사 업무”를~~~ (13) <u>기타</u> 관련 사업계획 등	내용변경
	34	4. 노선 및 구조물 형식 · 공법 계획 2) 구조물 설계 (4) <u>도로설계원칙</u> (국토교통부, 2012)	4. 노선 및 구조물 형식 · 공법 계획 2) 구조물 설계 (4) <u>도로교설계기준</u> (국토교통부, 2012)	내용변경
	35	2. 관련계획 검토 3) 다음사항에 대하여~~~ (4) 다음사항에 대하여~~~ ④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u>지방</u> 유역환경청과의 협의	2. 관련계획 검토 3) 다음사항에 대하여~~~ (4) 다음사항에 대하여~~~ ④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u>한강</u> 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내용변경
	36	6. 기본설계 2) 기본설계는 ~~ 이를 설계 도서로 작성하고, 각종 인 · 허가를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6. 기본설계 2) 기본설계는 ~~ 이를 설계 도서로 작성한다.	내용변경
	37	7. 설계VE 등 경제성 분석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내용변경
	38	9. 기타 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9. 기타 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용변경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 의견			비고
	Page	과업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변경)	
	39	1. 일반사항 1) <u>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u> , 기본설계 각 단계에서~~	1. 일반사항 1) 기본설계 각 단계에서~~	내용변경
	40	2. 토공설계 7) <u>깎기법면 경사지의 처리</u> 영구 <u>깎기법면 경사는</u>	2. 토공설계 7) <u>깎기법면 경사지의 처리</u> 영구 <u>깎기법면 경사는</u>	내용변경
	41	4. 포장설계 2) <u>포장두께의 결정</u> <u>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u> <u>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u> <u>검토하여야 하며,</u>	4. 포장설계 2) <u>포장두께의 결정</u> <u>포장의 두께는 도로 동상방</u> <u>지층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u> <u>깊이를 검토하여야 하며,</u>	내용변경
	43	7. 구조물설계 1) 교량 (1) <u>교량계획 기본사항</u> ① <u>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u> - <u>교량은 200년 이상의 흥</u> <u>수빈도를 고려하여 설계</u> <u>한다.</u>	7. 구조물설계 1) 교량 (1) <u>교량계획 기본사항</u> ① <u>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u> - <u>하천 통과교량의 설계빈도</u> <u>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른</u> <u>표준설계빈도를 고려하여</u> <u>설계한다.</u>	내용변경
	44	7. 구조물설계 1) 교량 (3) <u>내진설계</u> <u>도로교시방서 내진설계편에</u> <u>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u>	7. 구조물설계 1) 교량 (3) <u>내진설계</u> <u>도로교설계기준 및 관련시</u> <u>방서 내진설계편에 따라</u> <u>내진설계를 적용하여,</u>	내용변경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 의견			비고
	Page	파업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별첨)	
44	7. 구조물설계 1) 교량 (8) 형하공간은 시설한계, 유지 관리공간, 도로, 하천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 한다.	7. 구조물설계 1) 교량 (8) 형하공간은 시설한계, 유지 관리공간, 도로, 하천유지 관리,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내용변경
45	7. 구조물설계 2) 지하차도 (2) 지하차도 형식선정 ② 본 파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 주행성 향상을 위한 도로 구조로 설계되도록 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	7. 구조물설계 2) 지하차도 (2) 지하차도 형식선정 ② 본 파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 주행성 향상을 위한 도로 구조로 설계되도록 하고 국회대로 지하화 및 창동 - 상계 지하화 등 ~~		내용변경
46	7. 구조물설계 3) 옹벽설계	7. 구조물설계 4) 옹벽설계		내용변경
46	8. 배수시설 설계 3) 도로 횡단 배수관의 <u>최소규격</u> 은 <u>800mm</u>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8. 배수시설 설계 3) 도로 횡단 배수관의 <u>최소규격</u> 은 <u>1000mm</u> 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u>800mm</u>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내용변경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 의견		비고
Page	파업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변경)	비고
50	13. 기전설비 설계 1) 운전자 고려사항 (8) ~~조명은 조도, 광색 등 이 <u>조화기</u> 이뤄지도록	13. 기전설비 설계 1) 운전자 고려사항 (8) ~~조명은 조도, 광색 등 이 <u>조화가</u> 이뤄지도록	내용변경
50	13. 기전설비 설계 2)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 <u>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u> , 부하용량계산서~~	13. 기전설비 설계 2)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 <u>조도계산서</u> , 부하용량 계산서~~	내용변경
53	14. 기타 부대시설 설계  9) 기타	14. 기타 부대시설 설계 <u>9) 지하차도와 나들목이 근접 설치되어 있으므로 ITS 설치 계획을 검토</u>  <u>10) 기타</u>	내용추가  내용변경
60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3) <u>주요구조</u>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u>주요 구조계산서</u> (2) <u>주요 수리 계산서</u>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3) <u>구조</u>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u>구조계산서</u> (2) <u>수리계산서</u>	내용변경
65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 <u>공사시방서</u> 작성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5) 공사시방서</u> 작성	내용변경
66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5) <u>설계 예산서</u> 작성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6) 설계 예산서</u> 작성	내용변경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 의견			비고
Page	파일내용서(당초)	수정사항(별경)	비고	
67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6) 용지도 ·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u>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7) 용지도 · 지장물 조서 인·허가 서류</u>	내용변경	
68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7) 조감도 작성</u>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8) 조감도 작성</u>	내용변경	
68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8) CD 작성</u>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9) CD 작성</u>	내용변경	
68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9) 기타</u>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u>10) 기타</u>	내용변경	
70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u>(기본설계)</u>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u>(기본 및 실시설계)</u>	내용변경	
70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u>(기본설계)</u> 2) 최종성과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u>(기본 및 실시설계)</u> <u>기본설계 성과품에 있는</u> 2) 최종성과품 은 삭제	내용삭제	
71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u>(실시설계)</u> 1) 최종성과품 실시설계보고서	- 삭제 - 2) 최종성과품 종합보고서	내용삭제 내용변경 내용변경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채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9년 4월 25일

심의위원 : 이종호 

본 검토서는 2019.4.25(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 안건명: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소음진동 분야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함에 있어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by 기법(Statistical Pass-by)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또한 향후 소음지도(Noise Map)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장 소음과 교통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되며, 이를 통해 공사장 소음 민원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9년 4월 25일

심의위원 : 문 성호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 안건명: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p>1. (과업내용서 p.29) ⑤ 실내시험 하단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검토.</p> <p>(당초) 시료에 대한 시험은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수정) 시료에 대한 시험은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p> <p>2. (과업내용서 p.43) 6. 가시설설계의 8)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검토.</p> <p>(당초) 가시설 설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전문기술자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p> <p>(수정) 가시설 설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토질및기초 분야 전문기술자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p> <p>3. (과업내용서 p.43) 6. 가시설설계 세부 항목중 아래 내용을 추가 요망.</p> <p>(추가) 9) 주변 하천 및 지하수 조건을 고려한 적합한 차수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발주처 검토후 반영)	

2019년 4월 24일

심의위원 : 전재성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 안건명: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토목 구조	<p>1. 제1장 일반사항, 9. 설계자문, 2)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심의 및 자문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의견을 반영 한다”는 내용 추가 바람.</p> <p>2. 제1장 일반사항, 1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3)번 내용은 9. 설계자문 등의 1)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p> <p>3. 제2장 조사업무, 2. 조사내용,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2) 조사 및 시험, ③ 시추조사, d. 지하수위 측정에 “지하수위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과업기간 동안에 실측수위를 조사하여 설계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 바람.</p> <p>4. 제4장 실시설계, 7. 구조물설계, 1) 교량          (12) 탄천 횡단교량은 설계홍수량에 따른 최소경간장과 형하여 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한강접속 경계부임을 고려한 수리·수문 분석을 통한 기초 세굴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바람.</p> <p>5. 제4장 실시설계, 7. 구조물설계, 2) 지하차도          (8) 부력에 대한 안전성검토에 “안정성검토에 적용되는 지하수위는 실측조사수위와 설계수위를 검토하여 반영한다”는 내용 추가 바람.</p> <p>6. 제4장 실시설계, 7. 구조물설계, 2) 지하차도          (10) 집중호시 차수대책 내용 추가 “① 집중호우시 지하차도내 우수유입을 배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 반영한다. ② 집중호우시 집수정 기계설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차수안전대책을 수립한다.”          (11)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12)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상부 보행동선의 연결을 검토하고, 보행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내용 추가 바람.</p> <p>7. 제4장 실시설계, 7. 구조물설계, 2) 지하차도          (2) 지하차도 형식선정, ②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내용은 본 과업과 무관하므로 삭제.</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4월 25일

심의위원 : 남상진 

본 검토서는 2019.4.25(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토목구조	<p>1. 자구 수정</p> <p>(1) p13 2)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에서 “지적 및”은 삭제</p> <p>(2) p13의 3)항은 내용은 p11의 7. 용역감독 등의 3) 항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p> <p>“③) <u>건설사업관리</u> [민주기획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장래지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3) p13의 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p> <p>“『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장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치하는 민영화해야 한다.”</p> <p>(4) p63 “⑩ 설계 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에서 부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바람</p> <p>(5) p65 ⑧ 지장률도 작성항목에 다음을 추가하기 바람 “-제 2장 조사업무 4) 지장률 조사 (2) 확인 및 도면 작성에 의한다.”</p>	
종합의견	( <u>조건부채택</u> )	

2019년 4월 25 일

심의위원 : 조미리 (서명)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도목시공	<p>1. 11page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에 (4)번 항목으로 &lt;(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gt; 내용 추가요망</p> <p>2. 17page 22. 하도급 사항에 &lt;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gt; 7)번 항목 추가요망</p> <p>3. 53page 14. 기타 부대시설 설계 5)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며 필요시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 과)와 협의한다. ⇒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고 시인성이 개 선된 장수명 공법의 적용을 검토하며 필요시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 과)와 협의한다.</p> <p>4. 44page 7. 구조물설계(2)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 강교를 선정하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도장시 하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강교를 선정하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국도 서방서를 참조하여 50년이상 장수명 방식공법 적용을 검토하며 도장시 하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한다.</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4월 25 일

심의위원 : 김영섭 9/16(서명)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기계 설비	<p>1. 지하차도에 대한 배수설비(배수펌프) 운영을 위한 전기실은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에 설치하도록 계획할 것을 명시해야함</p> <p>2. 과업지시서 내용 중 51페이지</p> <p>13. 기전설비 설계</p> <p>6) 환기시설, 소화설비, 배수 및 통신설비 등 설치계획</p> <p>(1) 지하차도 내 환기시설은 Bypass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차도 환기방식 설정에 있어 Bypass방식 적용여부는 환기방식 검토 후 기계환기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주변 대기질이 법적 기준 초과시 적용해야함</li> <li>- 따라서, 환기방식 결정 전 지하차도 개통시에 대한 대기질 예측 필요함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상기 내용을 대기질 예측결과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하도록 변경해야함</li> </ul> <p>3. 과업지시서 내용 중 19페이지</p> <p>24.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p> <p>2) 적용기준 및 시방서</p> <p>(22) 국가화재안전기준</p> <p>(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p> <p style="text-align: right;">국민안전처</p> <p style="text-align: right;">국민안전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변경</li> <li>- 과업지시서 51페이지도 확인하여 변경</li> </ul>	

분야	검토의견	비고
기계 설비	<p>4. 본 과업구간에 올림픽대로 지하화구간 지하차도 신설이 계획되어 있어 지하차도에 대한 방재시설 설계가 필요하므로 발주부서에서는 본 용역 발주시 다음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제4조 2항에 따라 추후 지하차도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착공시 소방시설 설계 계약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함</li> <li>-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제21조, 22종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함</li> </ul>	
종합의견	<p>(조건부채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설비 설계에 대하여 과업지시서는 과업 현황에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li> <li>2. 발주부서에서는 용역발주시 설계완료 후 원활한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주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li> </ol>	

2019년 4월 25일

심의위원 : 문정주 (서명)

본 검토서는 2019.4.25(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기전 설비 설계	<p>페이지 50</p> <p><b>13. 기전설비설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통사항 항목을 추가한다</li><li>(1) 기전설비 설계에 있어서는 서울시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하고, 서울시 좋은 빛 위원회의 심의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li><li>(2) 조명등기구는 컷오프형을 기본으로 한다</li><li>(3) 조명의 주광원은 LED 램프를 기본으로 한다</li><li>(4) 광장등에는 하이마스트 폴을 사용한다</li><li>(5) 조명 점소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방향 시스템을 적용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이 되도록 설계에 제시 한다</li><li>(6)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과 관련하여 도로관리과와 도시빛정책과의 용역설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사전 협의한다</li><li>(7) 조명에 대한 음영 및 불쾌감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설계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를 설계에 반영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li><li>(8) 지하차도등의 기전설비에 대한 원격제어 및 감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li></ul>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4월 25 일

심의위원 : 정찬웅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p>1.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과업내용서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종합의견	원안채택	

2019년 4월 25 일

심의위원 : 정운수 *(서명)*